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397

발의연월일: 2025. 5. 7.

발 의 자:김성원·김선교·구자근

이종배 • 고동진 • 임이자

박충권 · 김정재 · 박성훈

이헌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986년 우리나라에 천연가스가 처음 도입된 이후 LNG 도입부문은 약 20년 동안 가스공사의 독점 체제가 이어져 왔음. 이후 1997년 舊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스시장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발전용및 산업용 대규모 사업자의 자가소비용 도입이 허용되었고 2005년에이르러 직수입 물량이 처음으로 국내에 수입되었음. 2005년 33만 톤에불과했던 LNG 직수입 물량은 2024년 1,223만 톤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4년 우리나라 전체 LNG 수입량의 26%에 해당함.

국내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천연가스 도매시장과 배관망은 여전히 한국가스공사 독점 구조로 이루어져 있 으며, 특히 배관망의 경우 가스공사가 소유자이자 운영자로서 배관시 설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전권을 보유하고 있어 망 확충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망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국가 인프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활용을 목적으로 한 배관시설 공동이용을 위하여 가스공사가 배관망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배관시설이용자의 가스 인입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관망 신설 확충 및 압력 보강 등 증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 재원은 시설이용자가 공동 부담하는 이용요금을 통해 마련하도록하는 등 배관시설 확충 및 이용에 관한 원칙을 「도시가스사업법」에 명확히 정하고자 함(제39조의7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 따라"로, "설비 능력의 범위에서 제39조의8제1항에"를 "제39조의8제1항에"로 한다.

제39조의7의 제목 "(금지행위)"를 "(배관시설 이용 제공의 원칙)"으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가스배관시설 시설이용자는 배관시설 이용을 위하여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가스도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주간 인입계획량
- 2. 정압 압력
- 3. 배관 정비 계획
- 4. 배관망 재고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배관능력의 이유로 시설이용자의 인입 제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비 능력을 갖추어

야 하며, 증설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④ 가스도매사업자는 제39조의8에 따라 수납한 시설이용요금을 배 관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이행에 관하여 점검하고 가스도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가스도매사업자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제13호 중 "제39조의7제2항에"를 "제39조의7제5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 이용) ① (생 략) 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배 ② 제1항에 따라-----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 자는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제3 제39조의8제1항에-----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 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나프타부생가스 · 바이오가 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 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게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 공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의7(금지행위) ① (생 략) 제39조의7(배관시설 이용 제공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 ② 가스배관시설 시설이용자는 도매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 배관시설 이용을 위하여 가스 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의 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가스도매사업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신 설>

<신 설>

<신 설>

따라야 한다.

- 1. 주간 인입계획량
- 2. 정압 압력
- 3. 배관 정비 계획
- 4. 배관망 재고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배관능력의 이유로 시설이용자의 인입 제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비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증설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④ 가스도매사업자는 제39조의 8에 따라 수납한 시설이용요금 을 배관시설의 확충 및 유지· 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이행에 관하여 점검하고 가스도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가스도매사업자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의 중지를 명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2. (생 략)

13. <u>제39조의7제2항에</u> 따른 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 15. (생 략)

<u>할 수 있다.</u>
제51조(벌칙)
1. ~ 12. (현행과 같음)
13. <u>제39조의7제5항에</u>
14.・15. (현행과 같음)